

문서번호	복지정책과-5189
결재일자	2015.3.4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희망복지지원담당	복지정책과장	교육문화복지국장		
이행우	성기창	민지선	03/04 도일환		
협 조					

**효율적인 사례관리 운영을 위한  
'15년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계획**

**2015. 3.**

**교육문화복지국**  
**복지정책과**

# 효율적인 사례관리 운영을 위한 '15년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계획

통합사례관리 대상 발굴 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으로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

## I 추진근거

- 2015년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(사례관리사업비 지원) 교부 결정 통보  
(서울시 복지정책과-2361호, 2015.1.30)
- 2015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(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지침)  
(서울시 복지정책과-4697호, 2015.2.25)

## II 현 황

- '15년 예산액 : 총17,828천원(국:3,000천원, 시:6,000천원, 구:8,828천원)  
(매칭비율 : 국비20%, 시비40%, 구비40%, 국고보조사업, 추가 구비 확보)

- '14년 집행현황 (예산액 20,759천원)

● 운영비 (단위:천원)

예산액	집행잔액	집행액계	강사료, 프로그램운영등	사례집발간, 홍보물품	업 무 휴대폰
12,300	359	11,941	6,982	4,211	748

● 사업비 (단위:천원)

예산액	집행잔액	구 분	집행액계	의료비 (검사비등)	월세 체납등	생활용품	가스요금 체납	유류비 등
8,100	0	건 수	27	8	2	13	3	1
		금 액	8,100	2,713	600	3,520	767	500

### Ⅲ 구성 내역

항 목	구 분	지원내용	비 고
운 영 비	사례관리 회의경비	- 사례관리 회의 시 외부전문가 회의수당 (1인당 최대 10만원 참석수당 지급 가능)	
	교육훈련비	- 내부교육 훈련비 : 사례관리 교육, 슈퍼비전 - 외부기관 교육훈련비 : 외부사례관리교육과정 참여자는 통합사례관리사 여비(교육비)지급	
	기타 운영비	- 사례관리사업 홍보비 : 홍보물제작 및 홍보물품 제작 등	
사 업 비	의료비	- 장애 진단을 위한 진료비, 정신과 심리 진단 및 심리치료비, 알콜중독·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진단을 위한 검사비와 치료비 -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는 진단비, 의료비 등 지원 불가	
	생활지원비	- 욕창방지, 난방 등 복지용도로 필요한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 품 구입비, 단전·단수, 도시가스 체납액 지원 및 월세(긴급한 경우에 일정기간만 지원가능) 등 지원	
	교육훈련비 보조	- 이·미용, 피부미용, 조리(한식, 양식, 일식 등), 제과 제빵, 전자 정보 처리,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, 기타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비 등	
	기타 사업비	- 사례관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사례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대해 사업비 집행계획을 사전 수립, 과장 결재 절차를 거쳐 사업비 집행 가능	

※ 사업비 1가구 당 최대 지원액 : 50만원(의료비+생활지원비 등)

- 1가구당 생활지원비는 최고 30만원까지, 진단비 및 교육비 등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가능

(단,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논의 후 과장의 사전 결재하에 1가구당 1회에 한해 추가 지원가능)

- 대상자에게 생활비, 상품권 등 직접적인 현금급여 제공은 불가
  - 사업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관련 기관(병원, 학원 등)에 직접 지급하고, 생필품 등 물품은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지급
- 단, 의료비의 경우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후 결정된 사항에 대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후(사전지급은 불가)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

#### IV 추진일정

구분	추진시기(월)											
	1	2	3	4	5	6	7	8	9	10	11	12
사례관리 대상자 사업비 지원	연중 상시											
사례관리 슈퍼비전	수시											
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												
사례관리 자문단 회의												
홍보물 제작 등												

#### V 기타

- 운영비는 사례관리 대상자의 위급성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중복지원 방지
- 기타 관련 사항은 2015년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지침에 준용함. 끝.